

#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(국가 순서별)

2020.8.12.(수) 17:00 외교부(재외국민안전과)

- ※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(대사관·총영사관·출장소·분관 등) 홈페이지,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.13.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(Visa)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해당국 리스트는 동 게시글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)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1	가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추후 공지시까지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라 모든内外국인 입국금지(5.31)</li></ul>
2	가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9.)</li><li>※ 외교관(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)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</li><li>※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</li><li>※ 한국, 중국, 미국,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(3.13.)</li><li>※ 3.20.부터 육로해로 국경 봉쇄</li><li>※ 7.1.부터 항공을 통한 국경 개방(6.30.)</li></ul>
3	가이아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국제선 운항중단(4.3부터)</li><li>▶ 입국시 정부 지정 시설에 2주간 의무 격리</li></ul>
4	감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사실상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1.)</li><li>※ 4.13일부터 45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</li></ul>
5	과테말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국경 봉쇄 및 국제선 운항중단(3.16.)</li></ul>
6	그레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국경 봉쇄 및 국제선 운항중단(3.23.)</li></ul>
7	그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한국 등 12개 EU+ 역외국가 대상 입국 제한 완화</li><li>※ 그리스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그리스 정부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travel.gov.gr/#/">http://travel.gov.gr/#/</a>)에서 입국 48시간 전 △출발국가, △최근14일간 방문한 국가, △그리스 내 체류지 등에 대해 온라인 승객위치질문서(Passenger Locator Form)를 작성 제출 의무(승객위치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메일로 QR 코드 수신)</li><li>- 검역 요원이 모든 승객의 QR 코드 확인</li></ul>
8	기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7.17.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, 항공기 탑승 전 5일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 검사 방식) 제출 의무</li><li>※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</li><li>※ 출국 시에도 도착지 국가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제시 필요</li></ul>
9	기니비사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5.27.부터 출입국 허용,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 제출 필요(5.26.)</li></ul>
10	나미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4.30.)</li><li>※ 모든 입국자(자국민 및 영주권자)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 및 14 일간 시설격리(자부담)</li></ul>
11	나우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(입국전) 모든 여행객은 18개 국가*에서 14일 체류 후 나우루 입국 가능(7.24) *호주(빅토리아주 제외), 쿡제도, 피지, 프랑스령폴리네시아, 키리바시, 마셜제도, 마이크로네시아, 뉴칼레도니아, 뉴질랜드, 나우에, 팔라우, 피푸아뉴기니, 사모아, 솔로몬제도, 대만, 통가 투발루, 바투아누</li><li>- 입국전 14일 이내 상기 18개 국가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, 나우루 입국 예외절차 신청 가능</li><li>▶ (입국) 모든 여행객은 △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성, △코로나19 증상, 코로나19 확진유무, 접촉여행 기록에 대한 평가, △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, △필요시 기타 검사 실시</li><li>※ 모든 입국 여행객 지정 주거시설에서 격리, 입국지점부터 격리시설까지 교통, 숙식은 나우루 정부가 제공</li>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12	나이지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(입국전) 반드시 출발일 기준 2주내 PCR 검사 실시(출발일 5내 이내 검사 권장)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필요(6.10)</li> <li>▶(입국시) △공항 검역소에 건강진단서 및 검체 채취 예약서 제출(기내에서 작성), △여권 제출(자가격리 기간 중 이민청에서 별도 보유, 단, 외교관 여권 소지자 제외)</li> <li>▶(입국후) △도착공항 소재 지역 내 14일간 자가격리, △입국후 72시간 내 아부자/라고스 내 검체채취센터 예약 방문 후 PCR 검사 실시, △자가격리 14일 후 격리해제 인터뷰 실시, 격리 해제 시 여권 반환</li> </ul>
13	남수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외국에서 항공을 통한 입국 시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제출 필요(5.6.)</li> <li>※ 상세 소지 필요 서류는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</li> <li>※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필요</li> <li>※ 육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(3.24~)</li> </ul>
14	남아프리카공화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(4.9)</li> </ul>
15	네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8.31.까지 국내선·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 및 국경 봉쇄(8.10.)</li> </ul>
16	노르웨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8.20.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5.15.)</li> <li>※ 6.15.부터 노르딕 국가* 대상(스웨덴 제외) 국경개방 및 자가격리 의무 면제(6.12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르딕 국가 내 합법적인 거주/체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제3국민도(한국인 포함) 입국허용자가격리 면제.</li> </ul> </li> <li>*아이슬란드, 덴마크, 핀란드, 파로제도, 그린란드 전역</li> <li>※ 자국민, 체류 허가된 외국인,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(EEA) 회원국 국민, 가족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EEA 회원국 국민 대상(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) 입국 가능</li> <li>※ 모든 입국자는 노르웨이 입국 후 10일 간 의무 자가격리(5.7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</li> </ul> </li> </ul>
17	뉴질랜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3.19.부터 외국인* 대상 입국금지(3.19.)</li> <li>* 임시 비자 소지자(학생, 임시 노동자 등), 여행객</li> <li>※ (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) 6.19.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(NZeTA)를 발급받아야 하며,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(예: 승인(Confirmed) 상태의 환승비자 등)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※ 4.9.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(4.9)</li> </ul>
18	니우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4.1.부터 자국 거주민(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)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(4.3)</li> <li>※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</li> <li>※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</li> </ul>
19	니제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, 방역신고서 작성</li> <li>※ 자가격리 권고(단, 출장 등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)</li> </ul>
20	니카라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국제선 운항 중단 및 육로를 통한 입국 금지로 사실상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(6.11.)</li> <li>※ 임시 특별기 등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(단, 아시아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에서 출발하는 경우 입국 전 96시간 내 시행된 검사 결과 제출)</li> </ul>
21	대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(친구 방문, 결혼식 참석, 문화활동 참석 등)의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6.24.)</li> <li>※ 6.29.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(영문본) 항공사에 제출 필요</li> <li>-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'입경 검역시스템(<a href="https://hdhq.mohw.gov.tw/">https://hdhq.mohw.gov.tw/</a>)'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(입국 후 14일 자가격리)</li> </ul> </li> <li>※ 6.25.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, 에바항공, 케세이퍼시픽항공 계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(6.24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</li> <li>- 단,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※ 7.8.(목)부터 中低 감염위험 국가(한국 포함) 유학생(졸업예정자, 재학생) 입국 가능 (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)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를 항공사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p>에 제시하고 입경검역시스템에 입경 신고 완료          (대만 입경 후)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→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로 방역차량 탑승→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</p>
22	덴마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4부터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 국경통제 완화(7.2)</li> <li>※ 입국 시 필요서류 : 여권, 출입국사실증명서, 덴마크 입국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(관광 목적의 경우 덴마크 내 6일 이상 체류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문서)</li> </ul>
23	도미니카공화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30부터 입국 전 5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, 모든 승객 대상 입국 시 신속진단 키트 검사를 시행(비용 무료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기 결과 코로나19 양성이거나 유증상시 지정시설 격리</li> </ul> </li> </ul>
24	독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EU+ 역외국가 국민 원칙적 입국 금지(6.15.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7.2부터 EU+ 역외국가 전체 대상 입국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으며,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(주한독일대사관 공지 참고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△독일 국적자, EU시민, 독일 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제3국적자, △보건인력, 보건 연구원, 요양원 인력, △독일 입국이 필수적인 해외전문인력 및 유능한 피고용인, △운송인력, △농업 분야 계절노동자, △선원, △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없는 학생, △동반가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, △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, △외교관, 국제기구 인력, 군인, 인도주의 조력자, △종전 후 독일로 돌아온 이주민, △독일 경유자, △유학생 중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출석의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대학측 확인서를 지닌 신입생 및 교환학생</li> <li>-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</li> </ul> </li> <li>※ 사안별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 추진 단계에서 주한독일대사관 및 독일 연방 경찰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
25	동티모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9.)</li> <li>※ 특별한 경우, 총리 허가시 외국인 입국이 가능하나, 14일 격리(5.30)</li> <li>▶ 4.4.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(4.3)</li> <li>※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</li> </ul>
26	라오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31.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7.30.)</li> <li>※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서(RT-PCR 만 인정) 지참 필요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 및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</li> </ul> </li> </ul>
27	라이베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(6.27.)</li> <li>※ 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간이 테스트 실시하여 △양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격리, △음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</li> <li>※ 체온 측정 및 앱을 통한 전화번호 등록</li> </ul>
28	러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4.30.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△외교공관, △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, △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, △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, △항공 및 선박 승무원, △국제철도운송 승무원(기관사), △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, △외교공무사 종 소지자, △친족의 사망 관련 외교, 관용, 일반비자 소지자, 외교부 결정으로 발급 한 일반시증 소지자, △영주권자, △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, △러시아 연방기관(수 입장비 주문자)이 보안부에 제출한 목록에 명시된 수리장비의 수리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자, △체육 분야 고숙련 전문가, △본인 치료 목적 또는 환자인 친족의 간병목적, △외국인 고용주 관할 행정부 연방기관이 연방보안부 및 내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되어 고숙련 전문인력 자격으로 러시아연방을 일회성 입국하는 자, △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예외</li> </ul> </li> <li>▶ 3.30.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, 철도, 도보, 하천 등 이동제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△외교공관, △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, △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, △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, △하천선박 승무원, △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, △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, △정부간 택배통신 직원, △공식대표단은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29	레바논	<p>▶ 7.1.부로 국제공항 운영 재개 및 입국제한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96시간 내 출발국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항공편 탑승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(검사 결과 미소지 시 또는 양성 판정 시 탑승 불가)</b> (PCR 검사가 정확한 국가에서 입국한 승객) 입국 후 PCR 검사 이후 48시간 동안 주거시설에서 자가격리, 동 격리기간 중 48시간 내 검사결과 통보</li> <li>- <b>(PCR 검사가 부정확한 국가*에서 입국한 탑승객)</b> 레바논행 항공편 탑승 전 레바논 광광부에서 지정한 호텔을 예약(미예약시 탑승 불가)→입국 직후 받은 PCR 검사 후 48시간 동안 호텔에서 자가격리 → 72시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서 추가 격리 및 2차 PCR검사 시행</li> </ul> <p>*이라크 및 모든 아프리카 국가(남아프리카공화국/중앙아프리카공화국/가나/튀니지/알제리/모로코 제외)</p> <p>※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<a href="https://arcg.is/0GaDnG">https://arcg.is/0GaDnG</a>에서 건강확인서 출력 및 작성 필요</p> <p>※ 만 12세 이하의 승객, UNFL 직원을 제외한 모든 도착 승객은 입국 직 후 공항 내 의료시설에서 다시 PCR 검사 시행(비용 50만불, 항공요금에 포함), 검사결과 48시간 내 통보</p>
30	르완다	<p>▶ 8.1.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(7.29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르완다 입국경유자는 △항공기 탑승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(PCR) 음성확인서 소지, △도착 72시간 전 <a href="http://www.rbc.gov.rw">www.rbc.gov.rw</a>에 접속하여 입국 관련 정보(성명, 여권번호, 항공편 등)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(입국자의 경우 예약한 호텔명 입력)</li> <li>※ 르완다 입국자는 입국 직후 △코로나19 재검 실시(비용 자부담) 및 결과 판정 시까지 지정호텔에서 24시간 격리(르완다에서 지정한 호텔에 사전에 직접예약, 비용 자부담)</li> </ul>
31	리비아	<p>▶ 3.16.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4.)</p>
32	리투아니아	<p>▶ 3.16.부터 원칙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유럽경제지역 회원국, 스위스, 영국, 북아일랜드 지역(8.10.-8.16.): △(룩셈부르크, 루마니아, 스페인, 벨기에, 불가리아, 몰타, 스웨덴, 체코, 네덜란드, 포르투갈, 아이슬란드) 해당 국가 국민 및 거주자 입국 금지, △(스위스, 프랑스, 폴란드, 크로아티아, 오스트리아, 사이프러스) 해당 국가 국민 및 거주자 입국 허용, 자가격리 의무, △(그 외)입국 허용</li> <li>※ △자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가족, △화물운송 운전자, △외교관, △NATO 관계자 및 가족 예외적 입국 허용</li> <li>※ 거소지 복귀, 외국정부의 요청, 선원 등의 경우 환승 가능</li> </ul>
33	마다가스카르	<p>▶ 3.20.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内外국인 입국금지(3.18.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(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.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</li> </ul>
34	마셜제도	<p>▶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6.5.)</p>
35	マイ크로네시아	<p>▶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(5.4.)</p>
36	마카오	<p>▶ 3.18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7.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최근 14일 이내 외국, 홍콩, 대만을 방문한 마카오 거주자 14일 격리(3.25.)</li> <li>※ 중국본토, 홍콩, 대만 주민의 경우(3.25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</li> <li>- 최근 14일 이내 홍콩,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</li> <li>- 최근 14일 이내 중국 본토에만 머무른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위험지역(후베이성 등)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검역 조치</li> </ul> </li> </ul>
37	말라위	<p>▶ 자국민 및 영주권자 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입국시 21일간 의무 격리</li> </ul> <p>▶ 4.1.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(3.29)</p>
38	말레이시아	<p>▶ 3.18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별도 공지시까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) ①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(가족관계 증빙서류와 Dependent Pass 소지), ②영주권 소지자, ③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, ④외교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①,②, ③의 경우에는 이동제한명령(3.18.) 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도 받아야 재입국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)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(유효한 관련 비자 소지자 또는 승인된 관련 비자 신청자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아래 대상 중 현재 말레이시아 체류자가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 서는 출국 전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서한 필요, 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</li> </ul> </li> <li>- 취업비자-Caterogy 1 소지자와 거주비자-Talent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,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이민국장의 승인 없이 입국 가능(단, 7.11. 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출국 및 재입국에 대한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필요)</li> <li>* 입국심사위원회(Expatriate Committee)로부터 승인 받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자(Pass)가 만료된 경우에는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서한 및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단수비자(Single Entry Visa) 발급 후 입국 가능</li> <li>- △취업비자-Category 2 및 3 소지자와 그들의 부양가족, 외국인 가사보조인, △전문가 방문 비자(Professional Visit Pass, PVP) 소지자, △취업비자 및 거주 비자-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(18세 이상 자녀, 부모 등) 소지자는 관계 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</li> <li>※ (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) 공립 및 사립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해당 학교, Education Malaysia,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받은 후 입국 가능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학생 : ①현재 유효한 학생 비자 소지자, ②2020.2.1. 이후 비자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자(신규 학생 관련 입국 승인은 별도 공지시까지 보류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②의 경우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 Single Entry Visa 발급 필요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※ 7.24.부터 모든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(자부담) 실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국 전 : 시설격리 관련 LoU(Letter of Undertaking and Indemnity) 작성 및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 사본 송부,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 입국허가서를 발급, MySejahtera 앱 다운로드 및 필요정보 입력(LoU 원본, 입국허가서 및 기타 이민국 발행 입국가능증빙서류는 입국 과정 동안 소지 필요)</li> <li>- 입국 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, 항공사 규정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항공사 문의 필요</li> <li>- 입국 시 보건부 건강검사를 통해 유증상자는 병원 이송, 코로나19 검사 실시(자부담)</li> </ul> </li> </ul>
39	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25.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입국 요건) △건강상태신고서 작성, △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검사 방식) 제출,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/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(비용 자부담)</li> <li>- (출국 요건) △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, △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검사 방식) 제출, △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</li> <li>- (경유 요건) △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검사 방식) 제출, △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, △발열 체크, △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</li> </ul> </li> </ul>
40	멕시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시 체온측정 및 문진표 작성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, △경증시 자가격리, △중증시 입원조치</li> </ul> </li> </ul>
41	모로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0.까지 국경봉쇄(육·해·공)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7.9.)</li> <li>▶ 7.15.부터 카사블랑카에서 파리 등 전 세계 21개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 계획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△(대상) 모로코 국적자 및 가족과 모로코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가족, △(탑승요건)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항체 검사 결과 제출 의무(단, 11세 미만 어린이는 동 검사 면제)</li> </ul> </li> </ul>
42	모리셔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5.1.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,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(3.3.)</li> </ul> </li> </ul>
43	모리타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(3.15.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육로국경 전면 폐쇄</li> </ul> </li> </ul>
44	모잠비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△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 △모잠비크 입국자(국적 및 증상 여부와 무관)에 대해 14일 자가격리(증세 있을 시 병원 이송)(3.20.)</li> <li>▶ 5.12.부로 국제 항공편 운항 중단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45	몰도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6.23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△몰도바인의 가족, △장기체류 비자, 거주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체류허가증 소유자, △업무목적으로 여행하는 자(비자, 거주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문서 제시 필요), △몰도바 주재 외교단/국제기구 직원과 가족, △몰도바 경유 승객은 예외</li> <li>※ 입국 가능한 경우 검역카드 작성 및 14일간 자가격리(예외: △화물운송 관련 종사자, △업무 목적으로 여행하는자(비자, 거주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문서 제시 필요), △몰도바 주재 외교단/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, △몰도바 경유 승객 등)</li> </ul> </li> <li>▶ 6.15.부터 정기 국제여객항공 운항 재개</li> </ul>
46	몰디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5.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 및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 발급</li> <li>※ △입국 전 사전에 등록된 숙박시설 예약 필수(체류 기간 중 동일 시설에서 체류 필요), △공항에서 발열체크, △유증상인 경우 PCR검사(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 의무), △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 실시 가능</li> <li>▶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</li> </ul>
47	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'안전한 통로*' 이외의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(집 또는 호텔)(7.1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독일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사이프러스, 스위스, 프랑스, 스페인, 폴란드, 아이슬란드, 슬로바키아, 노르웨이, 덴마크, 헝가리, 핀란드, 아일랜드, 리투아니아, 라트비아, 에스토니아, 룩셈부르크, 체코, 크로아티아, 그리스</li> </ul> </li> <li>※ 위반시 최대 3,000유로 벌금 부과</li> </ul>
48	몽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31.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7.29.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△외교단·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, △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, △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</li> <li>※ 외교단 포함 입국자 전원 총 35일(21일 시설격리(비용 자부담) 및 14일 자가격리) 실시, 시설격리 기간 중 총 4회 PCR 검사 시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에서 입국할 경우,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▶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(4.28.)</li> </ul>
49	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사이판) (입국자 전원) 코로나19 음성확인서(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 결과*)를 반드시 제출,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(비거주자의 경우 1박당 \$400 자부담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, 검사수행기관명, 검체수집일(입국 3~6일이내), PCR 검사 실시 여부, 검사 결과 필수 포함</li> </ul> </li> <li>※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*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 (Mandatory Declaration Form) 작성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www.governor.gov.mp/covid-19/travel</li> </ul> </li> <li>※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</li> <li>※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(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\$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거주자) 상기 절차 후 자가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자가격리 종료</li> <li>(비거주자) 상기 절차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</li> </ul> </li> <li>(기타)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(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(<a href="http://www.cisa.gov/critical-infrastructure-sectors">www.cisa.gov/critical-infrastructure-sectors</a>)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,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(cnmihealthofficial@chcc.gov.mp)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▶ (괌)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 등 자가 모니터링 필요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한국 등 저위험 지역발 입국자 중 △5박 미만 체류자는 의무격리 면제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, △5박 이상 체류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(입국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괌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 검사확인서)를 제출하거나, 입국 후 5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하면 의무격리 면제</li> <li>※ 저위험 이외 지역발 입국자는 정부 지정시설 14일 의무격리가 원칙이나, 코로나19 음성 확인서(입국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괌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 검사확인서) 제출 시 자가숙소 격리 전환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저위험국가 및 그 이외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한국내출장소 홈페이지 참고</li> <li>▶ (하와이) 8.31.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(내·외국인, 국제·국내선 방문객, 거주자 등 불문)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(7.13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거주자는 자택,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(비용 자체부담)</li> <li>-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※ 항공 승무원, 응급상황 대응인원,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,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</li> <li>※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</li> </ul>
50	미얀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 및 경북),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5.)</li> <li>▶ 3.25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(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) 제출 의무 부과(3.24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침 필요(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, 기침,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)</li> <li>※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, 스위스, 영국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20.)</li> <li>※ 미얀마와 인접 국가*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(3.19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중국, 태국, 인도, 라오스, 방글라데시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▶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·자가 격리 기간 28일(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 격리)로 확대 시행(4.11.)</li> <li>▶ 외교관, 유엔관계자,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(3.29.)</li> <li>※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,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(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)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</li> <li>※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,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</li> <li>▶ 간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총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(6.19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</li> <li>-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</li> <li>-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,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</li> <li>-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▶ 8.31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</li> </ul>
51	민주콩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24.)</li> </ul>
52	바누아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0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영주권 소지자 예외</li> <li>※ △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(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), △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, △왕복 항공권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
53	바레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25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예외: 거주허가증 소지자, GCC국가 국민, 외교관, 사전입국허가 대상자, 군인, 승무원, 공무원 및 UN관계자</li> <li>※ 3.18.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(3.16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도착비자 발급 대상자는 사전에 e-visa(<a href="http://www.evisa.gov.bh">www.evisa.gov.bh</a>) 신청 필요(증빙서류 포함)</li> </ul> </li> <li>※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10일간 자가격리 실시(격리해제 시 추가 검사 실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7.21.부터 승무원, 외교관, 공무목적, 의료목적 등을 제외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용(2회, 총 60BD, 약 160미불) 자비 부담 계획 발표(7.12.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54	바베이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명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p>명서 지참 필요</p> <p>※ 온라인에 게재되어 있는 입국카드(ED)를 작성하여 바베이도스 정부에 제출하고, 바베이도스 정부에서 신청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확인서 지참 필요</p>
55	바하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10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(PCR) 음성결과서, 도착 시 발열 검사,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</li> <li>▶ 7.22.부터 캐나다와 유럽 연합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</li> </ul>
56	방글라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승객은 2주간 격리가 권고되며,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(3.23.)</li> <li>- 법집행 기관이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추후 공지시까지 격리 지속</li> <li>※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(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(영문) 제출 의무(3.23.)</li> </ul> </li> <li>※ 3.23.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 무기한 금지(3.23.)</li> <li>▶ 국제선 운항 중단(5.14)</li> </ul>
57	베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검사 실시 후 △음성 판정시 48시간 격리하며 유전자검출 검사 대기, △양성 판정시 14일간 격리(지정호텔,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)(3.17.)</li> </ul>
58	베네수엘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 실시 △코로나19 음성 판정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, △양성 판정시 의무격리(4.5.)</li> <li>※ 베네수엘라 출·입국 모든 외국인 대상,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대사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(3.18.)</li> <li>▶ 베네수엘라항발 전 항공노선 운항 중단 조치 30일 연장(6.12.)</li> </ul>
59	베트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22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21.)</li> <li>※ △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, △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(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)</li> <li>※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(한국의 경우 3.12.부터 이미 중단)</li> <li>※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, 외교·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(전문가,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)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</li> <li>※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(2.29.)</li> <li>※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(3.17.)</li> <li>※ △특수 상황(전문가, 사업가, 고급기술인력)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, △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*를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여권번호, 해당국가내 주소, 베트남내 체류주소, 검사기관명, 검사 샘플 채취일, 검사일자, 검사방법, 검사 결과,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,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</li> </ul> </li> <li>※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,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</li> </ul>
60	벨기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EU+(EU 회원국, 영국,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) 역외국가 대상 입국 금지(6.11.)</li> <li>※ △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+(노르웨이, 리히텐슈타인, 스위스, 아이슬란드) 국가 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, △외교관, 의료인, 백신개발 연구자, △운송업자, 타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,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, △국제보호를 원하는 난민, △필수 고급인력, △학생, △선원, △국제기구 회의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14일 자택 격리 및 14일간 출근 금지(재택 근무)</li> <li>※ 여행 지역 및 수단과 관계없이 입국 시 위치 정보 양식 제출 필요</li> </ul>
61	벨리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23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22.)</li> <li>※ 3.24부터 공항 폐쇄</li> </ul>
62	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25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24.)</li> <li>※ △의료진 및 응급환자, △국경지역 근로자, △외교관, △체류허가 소지자, △경유자(네움지역 포함)의 경우 입국 가능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5.21.부터 시증면제협정국가 및 무시증입국 국가 대상 기업인 등 상용목적 입국 가능(5.2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△48시간 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, △상용목적을 입국 증빙할 수 있는 초청장, △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(입국 목적에 한해 제한적 외출 가능), △경찰서에 거류지 신고, △입국 목적 달성 후, 자가격리 의무 14일 경과 이전 출국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※ 5.21.부터 사증면제협정국가 및 무사증입국 국가 대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증명서 제출시 사망한 가족(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)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 및 72시간 체류 가능(5.28)</li> <li>※ 6.1.부터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</li> <li>※ 7.16.부터 EU회원국/솅겐협약국 국민 및 EU/솅겐국에서 발급한 복수시증 또는 체류 허가를 소지한 제3국 국민 입국 허용(7.16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국 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</li> </ul> </li> </ul>
63	보초와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세계보건기구(WHO)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(3.28)</li> </ul>
64	볼리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31.까지 국경봉쇄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6.26.)</li> <li>※ 3.21.부터 볼리비아 향/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 귀국을 위한 특별 항공편 제외</li> <li>- 거주자격소지 외국인은 예외적 입국 허용(단, △체류국 내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 허가 신청, △볼리비아 정부 지정 의무격리시설(호텔) 예약, △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서 지참, △자가격리 이행 서약서 제출, △입국 후 지정시설(호텔) 내 자가 격리(음성 시 7일, 그 외 14~21일) 등 검역절차 이행 필요)</li> </ul> </li> </ul>
65	부룬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EU국가, 영국, 미국, 호주,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,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호텔, 비용 자부담)(3.12.)</li> <li>※ 3.19.부터 신규 비자 발급 중단(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간이연장 가능)</li> <li>※ 3.21.부터 부줌부라 공항 폐쇄</li> </ul>
66	부르키나파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21.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内外국인 입출국 금지(3.20.)</li> </ul>
67	부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(3.6.)</li> </ul>
68	브라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29.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추면 항공을 통한 외국인 입국 허용(7.29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기 입국(최대90일)의 경우, 탑승 전 항공사에 체류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유효한 건강보험 증명서 제시</li> <li>※ 단, △마토그로수두술주, △파라이바주, △혼도니아주, △히우그란지두술주, △토칸 칭스주 소재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▶ 육상 및 해상(또는 수상)을 통한 입국 금지(7.29.)</li> </ul>
69	브루나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브루나이 이민국가등록청(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)의 사전 입국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전 입국 승인 신청은 이민국가등록청 이메일(info@immigration.gov.bn)로 신청하며, 브루나이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함</li> <li>※ 모든 입국자는 입국시 14일간 정부 지정시설 격리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(외국인은 비용 자부담)</li> </ul> </li> </ul>
70	사모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21.)</li> <li>※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</li> </ul>
71	사모아(미국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△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, △건강검진서 제출, △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(스크리닝)을 받은 후 검진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(3.24)</li> </ul>
72	사우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경봉쇄에 따른 외국인 입국금지</li> <li>※ 3.15.부터 국제선 운항 중단</li> </ul>
73	상투메프린시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5.4.)</li> </ul>
74	세네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5.(수)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항공기 탑승조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</li> <li>- 입국 7일 이내 출발국 내에서 정부 인증기관 혹은 국제 인증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유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거나 경유 공항을 벗어난 승객은 코로나19 증상 여부,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기술하는 ‘건강상태 신고서’ 작성</li> <li>- 출발국가의 의료 여건 상 코로나19 검사가 불가능하거나, 검사를 희망하더라도 검사받을 수 없는 국가에서 출발한 승객은 ‘건강상태 신고서’ 작성</li> </ul> <p>※ (공항 입국 조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입국(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)</li> <li>- 그 외 승객들의 경우,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(증상 여부, 출발지, 경유지, 경유지 체류 시간 등)를 한 후 검사 여부 결정</li> </ul> <p>※ 우리 국민 90일 간 무비자 체류 가능</p>
75	세이셸	<p>▶ 8.1.부터 저위험 국가 및 중간위험 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 허가(7.3.)</p> <p>※ (입국 조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</li> <li>- △코로나19 음성 확인서, △항공일정, △숙박지(세이셸 당국이 허가한 지정 호텔 중에서만 선택 가능), △세이셸 체류 시 유효한 여행자 보험 등을 세이셸 당국에 이메일(<a href="mailto:visitor@health.gov.sc">visitor@health.gov.sc</a>)로 통보 필요</li> </ul> <p>※ (저위험 국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, 사이프러스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라트비아, 말레이시아, 몰타, 모리셔스, 모나코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태국</li> </ul> <p>※ (중간위험 국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한국</u>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캐나다, 덴마크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디브, 네덜란드, 싱가포르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리랑카, 스위스, UAE</li> </ul>
76	세인트루시아	<p>▶ 7.9.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, 음성확인진단서를 제출</p> <p>※ 세인트루시아 도착 전 정부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stlucia.org">www.stlucia.org</a>)상에 있는 여행등록서에 코로나19 음성판정임을 증명하고, 체류할 호텔명 제출</p> <p>※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,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</p> <p>※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며, 입국수속 후 코로나19 지정 호텔 등에서 체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소지 입국자는 즉시 격리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됨(자비 부담)</li> </ul>
77	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	<p>▶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(7.1)</p> <p>※ 8.1.부터 7월 중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하여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는 대상 국가 선정</p>
78	세인트키츠네비스	<p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홍콩, 싱가포르, 일본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,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</li> </ul>
79	솔로몬제도	<p>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1.)</p> <p>※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</p>
80	수단	<p>▶ 3.16.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6.)</p> <p>※ 7.14.부터 10.10.까지 카르툼 국제공항 내 △UAE, △이집트, △터키 출발 항공기 착륙 허가 등 공항 폐쇄 일부 완화(7.13.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은 수단 입국 전 72시간 전 시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</li> </ul>
81	수리남	<p>▶ 3.14.부터 국경봉쇄(육해공)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</p>
82	스리랑카	<p>▶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(3.22.)</p> <p>※ 공항 안에서 머무르는 조건으로 12시간 내의 환승 허용</p>
83	스웨덴	<p>▶ 7.4.부터 EU+ 역외국가 중 한국, 알제리, 호주, 조지아, 일본, 캐나다, 모로코, 몬테네그로, 뉴질랜드, 르완다, 세르비아, 태국, 튜니지, 우루과이 14개국을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</p> <p>※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 입국 가능(최대 90일)</p> <p>※ 상기 입국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‘체류 국가’에 따라 적용되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의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와 스웨덴 도착 시 한국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p>에서 출발하였다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(영문 또는 스웨덴어로 번역 된 자료 구비를 추천)</p> <p>※ 단, 그 외 EU+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8.31.까지 연장</p>
84	스페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4.부터 한국 포함 12개 EU+ 역외국가* 대상 입국 제한 완화(7.3.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한국, 호주, 캐나다, 조지아, 일본, 몬테네그로, 뉴질랜드, 르완다, 세르비아, 태국, 튜니지, 우루과이</li> </ul> </li> <li>※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, 한국인은 단기방문 시 무사증 입국(최대 90일)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온라인으로 특별검역신고서 필수 작성, 입국시 QR 코드 제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여행 전 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 다운로드</li> </ul> </li> <li>②발열 체크, ③대면 심사</li> </ul> </li> </ul>
85	슬로베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EU+ 역외국가 국민 대상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△입국시 코로나19 양성이거나 명백한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, △슬로베니아 내 영구/임시처소가 없는 자는 호텔 등 실제 체류 장소에 격리되어야 하며 비용 자부담(자가격리 장소 제시불가 시 입국거부 가능)</li> <li>※ 외교관, 단순 통과자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36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EU 또는 쟁겐국에서 발급)를 제시하면 자가격리 불요</li> </ul> </li> <li>▶ EU 또는 쟁겐지역 영주권(임시체류 권한 포함) 보유자 중 역내 14일 이상 체류한 자는 격리 불요(5.17.)</li> <li>※ 자국민 혹은 영주권 보유 외국인이 코로나19 양성 혹은 감염증상 보일 시 긴급 의료시설 이송 가능</li> <li>▶ 자국 국경통제로 슬로베니아에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입국금지</li> </ul>
86	시에라리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16.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(3.14.)</li> <li>※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</li> <li>※ 3.19부터 모든 항공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사실상 입출국 불가</li> </ul>
87	싱가포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24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·경유 불허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싱가포르 국적자, 영주권자,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격리*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종료전 자부담으로 진단 검사 의무(200 싱가포르달러, 6.18) (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최근 14일간 한국, 일본, 중국, 호주, 뉴질랜드, 베트남, 대만, 브루나이, 홍콩, 마카오 체류했던 입국자는 자택 또는 거주지에서 격리, 나머지는 기존대로 지정시설 격리(6.18) / 단,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지정시설 격리시 격리비용(숙박비) 본인부담(2,000 싱가포르달러)</li> </ul> </li> <li>※ (경유 제한적 허용) 단, 6.11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도시*, 6.23부터 한국, 중국, 일본 일부 도시**에서 출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사 항공(싱가포르 항공, 실크에어, 스쿠트 항공) 이용 승객에 한해 창이공항 환승 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호주) 애들레이드, 브리즈번, 멜번, 퍼스, 시드니 / (뉴질랜드) 오클랜드, 크라이스트처치</li> <li>** (한국) 서울 / (중국) 홍콩, 중경, 상해, 광주 / (일본) 오사카, 동경</li> </ul> </li> <li>※ 3.30.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승인서(2주간 유효) 제출 의무(3.29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(비용 자부담),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88	아랍에미리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(7.1.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거주비자 소지자는 △연방 이민청(ICA)의 온라인 입국 허가 신청 및 승인, △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, △UAE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 실시 등을 요건으로 입국 가능하나, 요건 변경 가능하니 출발 전 확인 필요</li> <li>※ 단, 두바이는 7.7.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</li> <li>- 8.1.부터 두바이에 도착하거나 두바이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들은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p>지정 기관에서 96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두바이 장기거주비자를 소지한 경우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서(GDRFA)에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 필요</li> <li>- (경유) △수하물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경유 최대 24시간 허용(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수하물을 찾아 재수속 필요), △수하물이 없는 경우 공항 터미널 내 호텔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가능</li> </ul> <p>※ 두바이 등 여타 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</p>
89	아르메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외국인 입국 금지(3.16.)</li> <li>※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, 거주 등록자, 외교단·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자가 격리</li> </ul>
90	아르헨티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6.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8.1)</li> <li>※ 9.1까지 ANAC(민간항공청)의 승인을 받은 항공편만 운항 가능</li> <li>※ (이민청)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시행 이후 30일씩 체류기간을 연장을 발표하고 있으며, 의무자격리 조치(3.20.)이후 만료되는 무비자 및 장기체류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간 연장</li> </ul>
91	아이슬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6.부터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* 입국 가능(7.16.)</li> <li>* 한국, 일제리, 호주, 캐나다, 조지아, 일본, 모로코, 뉴질랜드, 르완다, 태국, 튜니지, 우루과이</li> <li>※ (필요서류) △유효한 여권, △한국 내 거주증임을 증빙하는 서류(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), △한국에서 출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항공권 등)</li> <li>※ 입국 전 사전 등록 필요, 아이슬란드 도착시 ①코로나19 진단검사(PCR) 시행(비용 자부담), ②14일 의무 자가격리) 중 선택</li> </ul>
92	아이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탑승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</li> <li>▶ 입국 시 발열 검사</li> </ul>
93	아일랜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4.24(금)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(4.24)</li> <li>※ 모든 승객들은 ‘승객위치질문서(Passenger Locator Form)’ 작성 제출</li> </ul>
94	아제르바이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31.까지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</li> <li>※ 단, 아제르바이잔 국민 귀국 목적으로 이스탄불, 프랑크푸르트, 런던 및 두바이 간 특별 항공편을 운항중이며,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동 항공편으로 입국 가능(항공편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)</li> <li>-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(외교관, 관용여권 소지자는 격리 면제)</li> </ul>
95	알제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경(육·해·공) 봉쇄에 따라 모든内外국인 대상 입국금지(5.28.)</li> </ul>
96	앙골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6.30.부터 앙골라 외교부, 내무부 및 교통부의 사전승인 하에 내국인, 외국인 체류자 (영주권자, 외교관, 투자, 유학, 노동비자 소지자 등) 출입 허용(6.12.)</li> <li>▶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(단, 국경봉쇄는 유지)(8.7. 대통령령 발표)</li> <li>※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(음성확인서 소지) 필수</li> <li>※ 8.15.부터 내국인 및 거주 입국자는 자가격리(앙골라 입국 전 출발국에서 실시한 RT-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, 앙골라 보건 당국에서 요청하는 자가격리 책임 동의서 서명 필수)</li> <li>- 단, 보건 당국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 환경이 부적합시 시설 격리가 가능하며, 앙골라 비거주 외국인 입국자(코로나19 음성확인자)의 경우 시설격리</li> <li>-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7일 후 RT-PCR 음성 판정 확인서와 함께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퇴소확인서 수령 후 격리 해제 가능</li> </ul>
97	앤티가바부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</li> <li>▶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</li> </ul>
98	에리트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 금지(3.25.)</li> </ul>
99	에스와티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(4.15)</li> </ul>
100	에콰도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‘거주’ 외국인 외 관광 등 단기방문 ‘비거주’ 외국인도 입국 가능(7.7.)</li> <li>※ 출국일 기준 7일 이내 출발국에서 발행한 PCR검사 음성진단서(영어 또는 스페인어) 소지 및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 격리(자가 또는 호텔)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p>※ '비거주' 우리 국민의 경우 만일에 대비 '에콰도르 외교부 비자귀화국장 명의 비거주 외국인 입국 허용 서한*' 사본 소지      *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</p>
101	에티오피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전 5일(120시간) 내 음성판정을 받은 확인서 제출시, 진단검사 샘플 채취 후 14일 자가격리(7.22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음성판정확인서가 없는 경우, 7일간 정부 지정시설(호텔 등)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</li> </ul> </li> <li>※ 입국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착비자(On Arrival Visa) 발급 제한, 방문 목적에 따라 출발전 E-Visa(<a href="http://www.evisa.gov.et">www.evisa.gov.et</a>)을 통해 신청 및 발급</li> <li>※ 경유승객은 공항내 Interline office에서 경유 비자(20미불) 발급 가능, 경유 최대 시간은 72시간(경유시간 72시간 초과시, 출국시 추가 50미불 지불)</li> </ul>
102	엘살바도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2.)</li> <li>※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, 거주비자가 있는 외국인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15일간 격리</li> </ul>
103	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(Passenger Locator Form) 제출</li> <li>▶ 영국 모든 지역에서 한국, 일본, 대만, 베트남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면제</li> <li>※ 최근 14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</li> </ul>
104	오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5.)(경유 제외)</li> <li>※ 단, △소속 회사, △대사관, △국영항공사(Oman Air 및 Salam Air)를 통해 오만 외교부에 입국 허가를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(비용 자부담), △입국자는 「Tarassud Plus」 앤 다운 로드 및 위치추적 스마트 밴드 구입(5리알), △오만 내 유효한 여행자 보험 가입</li> <li>- 외교관의 경우 상기 규정 예외, 14일 자가격리 의무</li> </ul> </li> </ul>
105	오스트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추후 공지시까지 비 쉬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(7.1.)</li> <li>※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, 인도지원사업 종사자, 보건 및 간호인력, 경유자,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</li> <li>※ 쉬겐지역 및 안도라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크로아티아, 모나코, 루마니아, 산마리노, 바티칸, 영국, 사이프러스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4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(6.11.)</li> <li>※ 쉬겐 지역 밖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△EU/EEU/스위스 국적자와 그 가족, △오스트리아 D비자 보유자, △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격 보유자는 4일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(6.11.)</li> <li>※ 31개 유럽국가'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(6.11.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안도라, 벨기에, 불가리아, 덴마크, 독일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그리스, 아일랜드, 아이슬란드, 이탈리아, 크로아티아, 라트비아, 리히텐슈타인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모나코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루마니아, 산마리노, 스위스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체코, 헝가리, 바티칸, 사이프러스</li> </ul> </li> </ul>
106	온두라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외국인(영주권자 제외) 입국금지(5.31.)</li> <li>※ 자국민,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,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</li> <li>※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</li> </ul>
107	요르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17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4)</li> <li>※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</li> <li>※ 3.19.부터 암만 출입 봉쇄</li> </ul>
108	우간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추후 공지시까지 국경 봉쇄(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)에 따라 모든 외국입국 금지(6.1.)</li> </ul>
109	우루과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(영주권자 제외) 입국금지(3.24.)</li> <li>※ 단, △우루과이 거주 외국인, △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, △외교관, △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, 선박, 항공기의 승객, △난민, △가족 간 재회의 사유, △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, 경제적,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가능(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실시)(6.8.)</li> <li>※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(7.6.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세한 조건 내용은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</li> </ul> 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30.부터 우루과이 연결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중단(3.28)</li> </ul>
110	우즈베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6.15.부터 일부 대상자*에 대한 국제선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(6.14.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△외교관 및 가족, △기진출 외국인 기업/기관 소속 전문가, △치료목적, △직계 가족 방문, △우즈베키스탄 환승 국제여객(외교적 요청이 있는 경우), △우즈베키스탄 내 장기체류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</li> <li>- 우즈베키스탄 도착시, 항공기 탑승 직전 한국, 중국, 일본, 이스라엘에서 14일간 체류한 승객은 격리면제</li> </ul> </li> </ul>
111	우크라이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6.15.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국시 우크라이나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보험회사 또는 그 보험회사와 의료비 지불 협력관계가 있는 외국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서를 입국수속 과정에서 제시 의무화(예외: 우크라이나 영주권 소유 외국인)</li> <li>* 최근 14일 이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가 우크라이나보다 많거나, 최근 14일간 확진자가 그 직전 14일간 확진자보다 30%를 초과하여 증가한 나라 (레드존 국가)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시행중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레드존 국가 리스트는 매 7일마다 업데이트되며, 최신 리스트는 우크라이나 보건부 홈페이지 참조</li> <li>- 한국은 그린존 국가에 해당(8.7.현재)</li> </ul> </li> <li>* 우크라이나 입국 후 시행한 코로나 진단(PCR) 검사 결과 또는, 입국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 진단(PCR)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, 자가격리/감시 관찰 종료</li> </ul> </li> <li>▶ 6.15.부터 정기 국제여객교통(항공/열차/버스) 운행(6.3.)</li> </ul>
112	이라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 운항 중단(5.11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특별별 목적 항공기 운항은 건별 승인</li> </ul> </li> <li>▶ 모든 입국자는 이라크 정부의 초청장 및 건강증명서 소지, 입국 후 회사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면서 보건부에 경과 보고(5.11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외교관은 건강증명서 소지, 입국 후 대사관 건물내에서 14일간 격리 실시</li> <li>*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경우, 보건부 지정병원에서 격리</li> </ul> </li> <li>▶ 이라크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증명서 소지(외교관 예외 없음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8.15.부터 이라크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은 PCR 음성증명서 소지 의무(단, 전세기는 예외 적용 가능)</li> </ul> </li> <li>▶ (쿠르드지방정부) 외국인 입국 허용(7.23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도착 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제시 또는 자비부담 PCR 검사 후 14일 간 자가격리(서약서 작성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된 대표단, 출장자 및 단기 관광객은 자가격리 불요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113	이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도착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(검사 및 격리비용 자부담)</li> <li>* 8.2.부터 관광비자 및 도착 관광비자 발급 중단(노동, 유학, 종교 등 복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)</li> </ul> </li> </ul>
114	이스라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9.1.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8.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간 이동 금지(3.5.)</li> </ul> </li> </ul>
115	이집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5.부터 항공, 육로,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는 현지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(샤름엘셰이크, 후루가다, 타바, 마르사알람, 마르사마트루)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. 다만, 상기 지역에서 타지역 이동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의무</li> <li>*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행자보험 필요. 항공사 조치가 수시 변경되므로 항공사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
116	이탈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.부터 한국 포함 14개 EU+ 역외국가(한국, 일제히, 호주, 캐나다, 조지아, 일본, 몬테네그로, 모로코, 뉴질랜드, 르완다, 세르비아, 태국, 튜니지, 우루과이) 대상 입국 제한 완화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여행 사유 자술서 제출 불요하나 14일간 자가격리</li> <li>* 상기 국가 외 제3국 입국 제한 유지</li> </ul> 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△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 목적, 주재국 内 거주지 주소(자가격리 장소), 해당 장소 이동 차량,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체(항공사 등) 제출 필수, △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, 체온측정, 마스크 착용 권고, △체온 37.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, △탑승 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,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, △입국자 전원(무증상자 포함),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, △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, 시민 보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(관련 비용은 자부담)</li> <li>- 격리의무 예외 : 업무·건강상 필수 목적의 단기체류자(120시간 이내 체류자) 및 항공기 승무원 등</li> <li>※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 가능(최대 90일)</li> </ul>
117	인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제선 여객기 운항 중단(5.25.)</li> <li>▶ (신규비자 제한적 발급) 인도 입국 불가피성 입증 및 탑승권 제시 필요(6.2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고용·프로젝트 비자를 제외한 기존 모든 비자 효력 정지</li> <li>※ 비즈니스 비자, 의료전문가, 보건연구원, 엔지니어 및 기술자 등에 대해서도 추적적으로 입국 허용(해당국 인도대사관에서 비즈니스 또는 고용 비자 신규 발급 필요)(6.2.)</li> </ul> </li> <li>▶ (격리조치)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에 따라 조치(5.24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원칙적으로 격리기간은 14일(시설격리 7일, 자가격리 7일)이나, 8.8.부터 출발 전 72시간 전에 포털(<a href="http://www.newdehliairport.in">www.newdehliairport.in</a>)에 self-declaration, 코로나19 음성확인서(출발전 96시간 내 발급)를 제출하면 시설격리는 면제되어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 (자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참조) (8.3.)</li> <li>-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시 입국심사장에서도 확인하므로 반드시 소지</li> </ul> </li> <li>▶ (코로나19 음성 확인서)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,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필요하며,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(3.10.)</li> </ul>
118	인도네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4.2.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(3.31)</li> <li>※ (예외 입국 대상) △장기체류허가(KITAS/KITAP) 소지자로서 체류기간 및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 △외교비자/관용비자 소지자, △외교/관용 체류허가 소지자, △의료, 식용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, △육로/항만/항공 수송기 종사자, △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</li> <li>※ (입국 방역조치) △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전 7일 이내 별행한 PCR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건강확인서를 소지, △건강확인서 미소지, 7일이 경과한 PCR 음성결과서 소지, PCR 음성결과 미포함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 실시, △신속진단 결과 양성이면 지정 병원으로, 음성이면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PCR 검사 실시</li> <li>※ (입국 후 관리대책) 14일 동안 자가격리 (건강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를 관할 보건당국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 미흡)</li> </ul>
119	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미국 등 146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</li> <li>※ 4.2.(목)까지 재입국허기를 받고 출국한 재입국허가 보유자는 8.5.(수)부터 일본 재입국 허용(7.2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입국시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「재입국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」를 발급받고, 일본 입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PCR 검사증명(지정된 양식) 제출(일본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출)</li> </ul> </li> <li>※ 4.2.까지 재입국허기를 받고 출국하여 9.1.(화) 이후 재입국하는 「영주자」, 「정주자」, 「일본인의 배우자 등」, 「영주자의 배우자 등」(이러한 자격을 가지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 포함)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「재입국관련 서류 제출확인서」 및 PCR 검사증명(지정된 양식) 제출</li> <li>※ 4.3. 이후 재입국허기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</li> <li>※ 4.3.부터 여타 재류자격 소지자(유학생·기업주재원 등)는 재입국 불가</li> <li>※ 일본에 재류 외국인 중 특별한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서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본 출입국 관련 기관에 문의 필요</li> <li>※ △특별 영주권자, △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
		<p>※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재입국 허가(6.12)</p> <p>(대상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이 되기 전 (한국에 대해서는 4.2.까지)에 해당 지역에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외국인 중) △일본에 가족이 체류중이며 가족이 분리된 경우, △자녀와 동반출국 중이며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된 자녀의 통학이 불가능할 경우, △치료·출산 목적, △친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식, △외국법원의 증인등의 출석 요구, △일본에서 초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·학생이 계속해서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경우</p> <p>(대상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이 된 후) △치료·출산 목적, △친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식, △외국법원의 증인등의 출석 요구, △일본에서 초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·학생이 모국 등에서의 입학시험의 수험 등을 치르고 일본의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경우(동반하는 보호자 포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시증 제한) 8.31까지 △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, △한국, 홍콩,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(7.29.)</li> <li>▶ (항공, 선박) 8.31까지 한국·중국발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(7.22)</li> <li>▶ (검역 강화)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(일본인 포함)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이용 자제 요청, 한국 등 입국 금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 PCR 검사 실시</li> </ul>	
120	자메이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6.15.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중단(국제 공항 및 항구 운영 재개)</li> <li>※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여행허가 취득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,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(고위험군: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, 저위험군: 14일간 자가격리)</li> <li>-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시행, 숙소 또는 정부시설에서 결과대기(음성 시 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)</li> <li>-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(고위험군: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, 저위험군: 도착 후 14일간 지정된 관광 허용 구역만 방문 가능)</li> <li>- 사업목적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(6.29)</li> <li>- 코로나19 고위험 지역 미국 일부 주(플로리다, 뉴욕, 애리조나, 텍사스)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입국전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제출 의무(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(visitjamaica.com)에 접속하여 PCR 검사 결과서 업로드 후 여행허가 취득)</li> </ul> </li> </ul>	
121	잠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(7.27.)</li> <li>※ 입국자 중 일부 승객을 정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재실시</li> <li>※ 입국 시 작성한 건강체크리스트 및 제반서류의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부서의 모니터링을 14일간 받음</li> </ul>	
122	적도기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(6.12)</li> <li>※ 모든 국제선 승객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지참시 검사비용 지불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박시설 대기</li> </ul> </li> <li>※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 관계자는 입국 전 사전에 주재국 외교협력부에 항공편 정보(편명, 출발지 등)를 포함한 소속직원(가족 포함)의 도착 날짜 및 시간 통보</li> </ul>	
123	조지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경봉쇄 및 외국인 입국금지(5.22.)</li> </ul>	
124	중국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28.(토)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교, 공무, 의전 비자 또는 C비자(승무원 등)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.</li> <li>- 그린카드(영주권)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.</li> <li>-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,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,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,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▶ 8.5.(수)부터 △취업, △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△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경우,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www.visaforchina.org">https://www.visaforchina.org</a>)를 통해 비자 신청 가능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p>※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-영사 및 비자 업무-'유학, 취업 등 비자 신청 안내' 공지문 참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(4.1)</li> <li>▶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의 출입국 금지</li> </ul> <p>※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각 성·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, 해외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,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</li> </ul>
1	간쑤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간쑤성 진입시</u>,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(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)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)(3.17)</li> <li>▶ <u>란저우시 진입시</u>, 모든 내외국민 기본정보, 입국정보 등을 사전 보고하고, 란저우 도착 후 핵산검사 실시, △음성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, △양성일 경우 병원 이송(모든 비용 자부담)(3.23)</li> </ul>
2	광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광둥성(선전, 광저우 등) 진입시</u>, △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, △홍콩·마카오·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,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·방문 기록 있는 자, △여타 중국 지역으로 입경하여 광둥성에 도착하고, 광둥성 도착 전 14일 내 외국 거주·방문 기록이 있는 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 (3.25)</li> <li>※ 단, 어린이, 임산부, 기저질환자 등은 사전 신청시 각 시·구에서 판단하여 자가격리 전환 가능</li> <li>※ 3.27부터 광저우 바이윈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(광저우 경유자 포함)은 거주지 불문 전원 공항 소재지인 광저우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</li> </ul>
3	광시좡족자치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광시좡족자치구(구이린시 등) 진입시</u>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및 핵산검사(2회)와 혈청항체검사(1회) 실시(4.20)</li> <li>▶ <u>난닝시 진입시</u>, 최근 14일 내 경외(홍콩, 마카오, 대만 포함)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</li> <li>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(타 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)</li> <li>※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</li> </ul>
4	구이저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구이저우성 진입시</u>,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9)</li> </ul>
5	네이멍구자치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</u>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(2회)와 혈청항체검사(1회) 실시(비용 자부담) (5.12)</li> <li>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로 이동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</li> </ul> </li> </ul>
6	닝샤후이족자치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</u>,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)(3.16)</li> <li>※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</li> </ul>
7	랴오닝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랴오닝성 진입시</u>, (공항, 항만, 육로를 통해)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,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(비용 자부담)(4.14)</li> <li>※ 베이징행 국제선 탑승자 중 랴오닝성 경유자 및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랴오닝성에 도착하는 자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</li> </ul>
8	베이징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베이징시 진입시</u>, 6.8.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객 전원(환승객 포함)은 16개 지정공항(톈진, 스좌좡, 타이위안, 후허하오타, 지난, 칭다오, 난징, 선양, 다롄, 정저우, 시안, 청두, 창사, 허페이, 란저우, 우한(예비)) 경유지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후 우회 입경만 가능(모든 비용 자부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외에서 입국하는 인원은 경유지나 목적지에서 14일간 시설 격리</li> </ul> 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	
				<p>완료시 베이징 복귀 후 추가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 실시(4.3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입경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, 입경 시 공항, 역, 검문소별 지침 숙지 및 검역 협조(경유지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증명서 반드시 지참)</li> <li>※ 4.30.부터 호텔 투숙시, 핵산검사 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하지만, 젠캉바오(健康宝) 그린 바코드를 제시해야 체크인 가능(호텔에 사전 연락하여 투숙시 필요사항 문의 요망)</li> </ul>
9	산둥성			<p>▶ 산둥성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(산둥성 경유자 포함)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3.3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해외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항공편을 통해서만 산둥성에 진입할 수 있으며, 최초 도착지에서 격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,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(3.27)</li> <li>※ 3.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,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</li> <li>※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(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, 시/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(주민위원회)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)</li> <li>※ 만 70세 이상 노인,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, 임산부,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△핵산검사 음성 판정, △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, △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(자가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)</li> </ul>
10	산시성 (陝西省)			<p>▶ 산시성 진입시,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(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)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)(3.17)</p> <p>▶ 시안시 진입시,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(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)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)(5.2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시안 센양공항)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 호텔 격리, 37.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(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) 또는 전원(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)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-3일 대기,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(양성) 또는 호텔(음성) 격리</li> <li>※ 시안 경유 승객도 같은 항공기에 동승한 기타 승객 발열시 시안에서 격리조치될 가능성(발열자가 확진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병원 격리 가능)(비용 자부담)</li> </ul>
11	산시성 (山西省)			<p>▶ 산시성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(5.19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</li> </ul> </li> </ul>
12	상하이시			<p>▶ 상하이시 진입시, 7.26까지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/ 7.27. 00:00부터 이하 조치 적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,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, 자가격리 조건(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,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)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(단,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</li> </ul> </li> <li>② 목적지가 장쑤성, 저장성,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, 목적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격리방침 준수(단,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)</li> <li>③ 목적지가 상하이시, 장쑤성, 저장성,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</li> </o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노인, 미성년자, 임산부, 거동이 불편한 자, 노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	
				되는 자, 기저 질환자 등은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할 경우,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신청 가능 ※ 3.25부터 상하이 흥차오 공항의 국제선(홍콩, 마카오, 대만 포함)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
13	시짱자치구	▶ 시짱자치구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(6.8) ※ 단,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		
14	신장위구르 자치구	▶ 신장위구르자치구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6.8) 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치고 진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간 시설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		
15	쓰촨성	▶ 쓰촨성 진입시,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(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)은 핵산검사 실시 후 △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, △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(모든 비용 자부담)(3.27) ※ 14일 지정시설 격리해제된 후에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※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,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※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,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 심사		
16	원난성	▶ 원난성 진입시,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26) ※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,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,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※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, 호텔,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에 입국 계획 통지 필요 ※ 원난성 경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※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(19개 육로 입국장 및 14개 통로 여객 운송 기능 잠정 중단, 기타 통로 폐쇄)		
17	장시성	▶ 장시성 진입시,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(장시성 경유자 포함)은 핵산검사 실시하여 △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, △양성판정자 및 유증상자는 병원 이송(모든 비용 자부담)(3.25)		
18	장쑤성	▶ 장쑤성 진입시,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(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 상이)(3.23)		
19	저장성	▶ 저장성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(비용 자부담)(3.18) ※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, 입경 전 사전 신고 플랫폼(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)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/ 이미 입경한 경우,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		
20	지린성	▶ 창춘공항,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1) ▶ 옌볜주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20) ※ 만 65세 이상 노인, 임산부, 영유아,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, 기저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 ※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※ 3.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복귀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 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,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, 이 외 이동 비용 · 핵산검사 · 폐CT검사 비용은 무료		
22	충칭시	▶ 충칭시 진입시,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 핵산 검사 진행, △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, △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(비용 자부담)(3.26)		
23	칭하이성	▶ 칭하이성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		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	
				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(6.8) 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 - 단,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
24	톈진시			▶ 톈진시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(입국 시 1회, 격리 기간 중 1회) 실시(비용 자부담)(6.5) 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- 단,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
25	푸젠성			▶ 푸젠성(샤먼시, 푸저우시 등) 진입시, 최근 14일 내 경외(홍콩, 마카오, 대만 포함)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9) 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타 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) ※ 만 70세 이상 노인, 미성년자, 임산부,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자가격리(단, 샤먼시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) 가능 ▶ 취안저우시 진입시, 최근 14일 내 경외(홍콩, 마카오 대만 포함)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 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, 타 도시에서 21일 이상 체류 후 방문 시 격리 면제 가능(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필요)
26	하이난성			▶ 하이난성(하이커우, 싼야 등)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6) ※ 단, 만 70세 이상의 노인, 어린이, 임산부, 기저질환자 등은 단독 거주지가 있고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, 입국 전 거주지 소재 시·현지 휴부에 신고 후 허가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(필요시 보호자 1인까지 동반 자가격리 신청 가능) ※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 적용
27	허난성			▶ 정저우시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의학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(3.29) ※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,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,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※ 허난성 입국 예정자는 입국 48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/회사가 거주지 방역지휘부서에 관련 정보 신고 요망
28	허베이성			▶ 허베이성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, 혈청항체검사, 흉부 CT 촬영 실시(비용 자부담)(4.27) 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※ 허베이성은 베이징시, 톈진시, 허베이성을 제외한 기타 성·시로부터의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중이며,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, 핵산검사 1회 등 실시 가능성 농후
29	헤이룽장성			▶ 헤이룽장성 진입시,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(2차례 핵산검사, 1차례 혈청항체검사 일괄 시행)(모든 비용 자부담)(4.2) ※ 운송수단 승선 검역,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, 체온 측정, 역학조사, 샘플 채취,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 ※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※ 만 70세 이상 노인,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, 임산부,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
30	후난성			▶ 후난성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(타지역 격리해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	
				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)
		31	후베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우한시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7)</li> <li>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,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 소지 필요</li> </ul>
125	중앙아프리카 공화국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*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, △유증상자의 경우 ▲ 21일간 자가격리(코로나19 환자 접촉자) ▲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(의심환자) ▲ 지정 병원 격리 치료(확진자), △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(3.6.)</li> <li>*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</li> <li>▶ 국제공항 폐쇄(4.2)</li> </ul>
126	짐바브웨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△입국시 검사, △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</li> </ul>
127	차드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.부터 입국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(7.30.)</li> </ul>
128	칠레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5.까지 모든 외국인(시민권자 및 영주권자, 거주비자와 현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외) 대상 입국금지(7.30.)</li> <li>※ 칠레 사증 보유자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</li> <li>※ 환승 및 출국은 가능(4.22.)</li> </ul>
129	카메룬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4.30)</li> <li>※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(기준 복수비자 소유자는 입국 가능)</li> </ul>
130	카자흐스탄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6.20.이후 한-카 정기 항공편 탑승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면제 (6.15.)</li> <li>※ 카테고리 1 국가 (한국, 중국, 일본, 조지아, 태국, 독일, 체코, 말레이시아, 헝가리, 인도) 출발 정기 항공편 입국자는 발열검사, 건강관련 설문지만 작성 (입국前 코로나 19 검사 불요. 입국後 코로나19 검사 면제)</li> <li>※ 카테고리 2 국가 (터키, 이집트, 우크라이나, 폴란드,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즈스탄, 타지키스탄) 출발 정기 항공편 탑승 입국자는 입국일 기준 5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소지 시에만 검사 면제</li> </ul>
131	카타르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4.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경유 승객 제외)(4.15.)</li> <li>※ 8.1.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가(한국 포함 40개국)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(7.21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국 허가 신청 필요(관련 내용은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)</li> <li>-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, 자가격리 서약서 작성, 7일간 의무 자가격리</li> <li>- 입국 후 6일 째 되는 날 재검사, △음성인 경우 입국 후 7일차에 격리 해제, △양성인 경우 14일간 추가 의무격리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
132	캄보디아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(3.30. 23:59부터)</li> <li>▶ (코로나 19 음성확인서)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, 72시간 이내(비행기 도착시간 기준)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</li> <li>※ 스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(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, 입국즉시 코로나19 검사 후 지정 시설 24시간 격리, 보험증서 불요), △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(3.31.)</li> <li>▶ (입국 절차) 캄보디아 도착 후 임시 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,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, 코로나19 진단검사, 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하며,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시 3,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(6.11.)</li> <li>※ 전체 승객이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, 한명이라도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승객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(5.20.)</li> </ul>
133	캐나다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31.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6.30.)</li> <li>※ 6.8.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△코로나19 무증상자로, △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, 사실혼 관계자,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, (양)부모,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, △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(단, 14일 이내의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)</li> </ul> </li> <li>※ 캐나다에 가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,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</li> <li>※ △항공기 승무원, △외교관, △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(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)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, 구체적 예외 해당자,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, 유증상자의 캐나다-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(<a href="http://overseas.mofa.go.kr/ca-ko/index.do">http://overseas.mofa.go.kr/ca-ko/index.do</a>)</li> <li>※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</li> <li>※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</li> <li>※ 8.20.까지 캐나다, 멕시코와 미국간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(7.16.) (단, 취업비자,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,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)</li> <li>※ 3.26.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</li> <li>※ 6.30.부터 공항내 모든 승객에 대한 의무적 체온 측정</li> </ul>
134	케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.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(7.30.)</li> <li>※ 입국 시 △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, △코로나 증상(기침, 발열, 호흡기 증상)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(한국 등 주재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음성확인서는 케냐 도착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발급받은 영문확인서만 인정(한글 및 번역확인서는 불인정, 검사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, 여권번호,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)</li> </ul> </li> <li>※ 통행금지 시간(오후9시~익일 오전 4시) 이후 입국자들은 유효한 항공권(탑승권 등) 지참시 호텔 혹은 거주지까지 이동 가능</li> </ul>
135	코모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7.)</li> </ul>
136	코스타리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8.1.부터 28개국*에서 항공기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 허용(7.28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아시아, 미국, 중남미국가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△코스타리카에 입국 전 입국 허용대상 국가에서 최소 14일간 체류, △항공기 탑승 최대 48시간 전 코로나19 진단검사, △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전자 자가진단서 제출, △코스타리카 보험공사(INSA) 여행자보험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△최소한의 의료비용(입원비) 및 △최소 14일간의 숙박비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 가입, △코로나19 증상 미발생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137	코트디부아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(8.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소지(출발지에서 도착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 감염력이 명시된 혈청 검사서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PCR 음성 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서 미제출 승객은 14일 격리대상(비용은 항공사 부담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138	콜롬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17.부터 국경을 봉쇄하여 내외국인 입국 금지(3.16.)</li> <li>※ 8.31.까지 국제항공 운항 중단</li> </ul>
139	콩고공화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(6.6.)</li> </ul>
140	쿠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(관광객)의 입국 금지(3.31.~) (단,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)</li> </ul>
141	쿠웨이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.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* 외 제3국가에서 최소 14일 이상 체류하고 PCR 음성 확인서(72시간 이내 발급) 제출 시 입국 허용(8.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방글라데시, 필리핀, 인도, 스리랑카, 파키스탄, 이란, 네팔, 중국, 브라질, 콜롬비아, 아르메니아, 시리아, 스페인, 싱가포르,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, 이라크, 멕시코, 인도네시아, 칠레, 이집트, 레바논, 홍콩, 이탈리아, 북마케도니아, 몰도바, 파나마, 페루, 세르비아, 몬테네그로, 코소보, 도미니카</li> </ul> </li> <li>※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2019년 9월 1일 이후 쿠웨이트를 출국했더라도 유효한 쿠웨이트 거주비자 및 Civil ID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(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)</li> </ul>
142	쿡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외국(뉴질랜드 제외)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4.~)</li> <li>※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</li> </ul>
143	크로아티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5 까지 한국 포함 비 EU 및 비솅겐협약가입국 대상 입국 허용(7.16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관광경제활동유학 목적 입국자) △입국목적 증빙(숙소예약 확인서, 유학 증빙서류 등), △검체 채취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) 제출(미소지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해제)</li> </ul> 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긴급목적인도적 사유 등 입국자) 14일간 자가격리 원칙(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확인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)</li> <li>- 일반 방문의 경우 개인 거주지에 체류할 목적의 입국은 불가, 숙소 예약확인서 등 증빙 필요, 개별 입국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내무부 웹사이트 (<a href="http://mup.gov.hr/uzg-covid/286210">http://mup.gov.hr/uzg-covid/286210</a>)에서 확인, 온라인출입국심사(<a href="https://entercroatia.mup.hr">https://entercroatia.mup.hr</a>)에 개인 입국정보를 사전 등록</li> <li>※ 제3국 국민(EU,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) 중 △체류허가 소지자, △의료인, △경유자, △접경지역 근로자, △필수재화 화물기사, △군인, △경찰, △재난관리본부 직원, △외교관, △상용/인도적 목적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</li> <li>※ 육로 경유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혹은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나 12시간 내 출국 필수(최종 목적지 국가로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)</li> </ul>
144	키르기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될때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22.)</li> <li>※ 단, △유효한 노동비자(W1, W2) 소지 외국인, △키르기즈내 각종 프로젝트 추진 및 여타 활동을 위한 전문가, △외교단, 국제기구 직원 및 동반 가족 등 입국 가능(6.18)</li> <li>- 노동비자(W1*, W2**) 소지자 : 관련기관의 요청없이도 자유롭게 입국 가능,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설격리 조치(비용은 노동비자 소지자 회사나 기관에서 부담), PCR 검사 결과 이후 자가 격리 가능 여부는 키르기즈 보건부가 판단</li> <li>*W1 : 주재국에 등록된 회사의 초청을 근거로 받은 비자</li> <li>**W2 : 주재국 기관의 초청을 근거로 받은 비자</li> <li>- 전문가 : 키르기즈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또는 각국에 소재하는 키르기즈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입국 허용</li> <li>- 외교관, 국제기구 직원 : 입국 시 체온 검사 PCR 검사, 14일 자가격리(또는 시설 격리)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국 가능, 비자 등 2-3개월전 미리 신청</li> </ul>
145	키리바시	▶ 3.20.부터 추후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경봉쇄(5.4)
146	타지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(4.8.)</li> <li>※ △외교공관/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, △승무원, △화물 운송 담당 기사 등은 입국 가능</li> <li>- 외교공관/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은 14일간 보건당국 감시 하 자가 격리</li> </ul>
147	탄자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5.부터 모든 여행객(복귀 거주자 포함)은 소속 국가 또는 이용 항공사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 것을 여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, 탄자니아 도착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</li> </ul>
148	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.1.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탠다드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, △태국인의 배우자, 부모 또는 자녀, △태국 영주권자, △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, △여객기 승무원, △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, 학부모, △의료목적, △외교단, 국제기구, 정부대표단 및 배우자, 부모, 자녀,</li> <li>※ (태국 입국 전 조치) △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, △주재국 발행 입국허가증(COE), △비행적합 건강증명서(Fit-to-Fly Health Certificate), △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(RT-PCR 방식), △10만불 이상의 치료비 (코로나19 치료 포함) 보장 보험가입증명서, △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, △출발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</li> <li>(태국 입국 후 조치) △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, △필수지침서류 제출, △모니터링 시스템/어플리케이션 설치, △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, △RT-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</li> </ul> </li> </ul>
149	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.부터 모든 입·출국자는 <a href="https://voyage.gouv.tg">https://voyage.gouv.tg</a>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, 입국자의 경우 로메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(경유자 제외)</li> <li>※ Togo Safe 모바일 앱 설치</li> </ul>
150	통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20.)</li> <li>※ 자국민,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</li> </ul>
151	투르크메니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20.부터 모든 내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(4.10.)</li> <li>※ 외교단, 국제기구 직원, 국제운항 종사자,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(출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) 출입국 허락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152	투발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중국 등을 포함한 고위험국가를 여행한 승객의 경우 3일 전 검역 당국에 의료소건서 제출(5.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국 전 최소 5일간 비고위험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피지, 키리바시, 투발루 공항에서 건강검사 실시</p>
153	트리니다드토바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23.)</li> </ul> <p>※ 추후 공지시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(5.9)</p>
154	파나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17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5.)</li> </ul> <p>※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</p> <p>※ 선박의 승하선 임시중단(3.13.)</p>
155	파라과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경 봉쇄 (육해공)로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(3.30~)</li> </ul>
156	파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파키스탄발 국제 항공편 일부 운항 재개(5.30.)</li> </ul> <p>※ 입국시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실시(보건 당국이 모니터링), 입국자 유증 상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운영 격리 센터(무료) 또는 지정 호텔(자부담)에서 격리</p>
157	파푸아뉴기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별도 공지시까지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만 입국 가능(6.17)</li> </ul> <p>※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음성결과 필요(7.20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 진단검사는 ‘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반응법(Real-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)’ 검사만 인정</li> </ul> </p> <p>※ 파푸아뉴기니 거주 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(비용 자부담)</p> <p>※ 파푸아뉴기니 국민 또는 영주권자는 지정시설(국가부담) 지정호텔(비용 자부담)에서 14일간 격리(비용 자부담)</p> <p>※ 외교관 여권소지자는 14일간 자가격리 가능(입국전 사전 승인 필요)</p>
158	팔레스타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마카오, 홍콩, 이라크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</li> </ul>
159	페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31까지 국경(육해공) 봉쇄로 입출국 금지(6.26.)</li> </ul>
160	폴리네시아 (프랑스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항공기 탑승 수속 전,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전자여행정보시스템(ETIS)상 등록영수증 또는 확인번호를 제출</li> <li>▶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받아 4일 후 검사</li> </ul>
161	피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국경 봉쇄(5.4)</li> </ul> <p>※ 단,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입국 가능</p> <p>(방안 1) 의료기관이 피지 입국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의료 증명서(호주뉴질랜드에서 14일간 격리, 코로나19 음성확인)지참시, 관광객들은 특별 지정 경로에 따라 목적지로 즉시 이동</p> <p>(방안 2) 피지정부 지정 격리시설 중 선택하여 자부담으로 14일간 격리 후, 코로나19 진단테스트가 음성일 경우, 관광 가능</p> <p>- 특별 지정경로에 따라 난디 공항에서 지정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정 호텔리조트로 즉시 이동 후 동 시설에서만 이동 가능</p> <p>※ 호주뉴질랜드에 있는 피지 국민·영주권자비자소지자 대상 △48시간 이내 발급한 의료증명서(호주뉴질랜드에서 14일간 격리, 코로나19 음성확인)를 소지하거나, △입국적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서 지참시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</p>
162	필리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22 00: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9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△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(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), △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, △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우 불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.1.부터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허용(7.17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리핀 이민법 제13조에 규정된 이민비자(imigrant visa, 영주권)만 해당하며, 은퇴비자, 취업비자,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입국 금지</li> <li>- 입국 전 필리핀 당국이 지정한 격리시설(호텔 등) 및 코로나19 검사업체 예약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1일 입국 가능 인원수를 제한하여 항공사별로 입국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므로, 항공권 예약 시 주의 필요</p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5.3. 08:00부터 5.10. 07:59까지 필리핀 내 국제공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(5.3)</li> <li>▶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(5.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엄격 격리 대상자*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,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리 시설에 격리됨.</li> <li>(음성 결과) 시설 격리는 해제,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</li> <li>(양성 결과)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</li> <li>*△WHO 최신 보고서에 따라 고위험 지역 또는 지역 감염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온 자로서 방역관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</li> <li>- 의무 격리 대상자*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,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(OWWA)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</li> <li>*엄격 격리 대상자 외 모두 의무 격리 대상자</li> </ul> </li> <li>▶ (Luzon 섬)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(육해공) 제한(4.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▶ (세부주) 3.17.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(3.14.)</li> <li>▶ (제너럴 산토스시) 3.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, 공항·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, (다바오시)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</li> <li>▶ (바탕가스주)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</li> </ul>
163	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20.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(3.19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영주권자,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, 3.29부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</li> <li>※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(5.14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기시간 8-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(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)</li> <li>- 단, NSW주에서 8-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</li> <li>- 주(州)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, 연방정부, 보건당국,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164	홍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(4.6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6.1.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는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, 홍콩을 경유한 중국 출입국 및 자기환승은 불가</li> <li>-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, 승객 간 1.5m 거리 유지</li> </ul> </li> <li>※ 중국, 마카오,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을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, 입국 후 14일간 자가/호텔 격리(4.6.)</li> <li>※ △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(영사단 포함), △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, △홍콩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</li> <li>※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자가격리(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)(3.19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/이동 및 출국 불가(위반 시 법적 처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/ 최근 14일 이내 대구·경북을 방문,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(4.17.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※ 해외입경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.22.부터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정병원 이송,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후 12일째 되는 날 코로나 19 재검사(4.21.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※ EU 회원국(27개) : 그리스, 네덜란드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몰타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일랜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, 크로아티아 (밀줄 국가는 非솅겐협약 가입국)

※ 쟁겐협약 가입국(26개) 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몰타, 벨기에, 스위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이슬란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 (밀줄 국가는 非EU 회원국)